

윤리실천 특별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이하 “회사”라 한다)와 이해관계자(이하 “공급사”라 한다)와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공급사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약관은 회사와 공급사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회사와 공급사 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회사의 임직원은 본 약관이 적용되는 공급사와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공급사에게 윤리규정과 관련된 내용을 제공하여 이를 숙지하게 한다.
②공급사는 회사의 윤리경영의지를 이해하고, 윤리규정 준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행위의 유형) ①공급사는 거래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2.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3. 채무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윤리규정 제10조 제1항 각 호¹⁾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위반시 제재) ①회사는 공급사가 제4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
- 1) 윤리규정 제10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① 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증여는 제외한다) 등 정당한 권리를 얻는 원인 행위에 의한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거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위반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4조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제4조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 거래물량 또는 거래규모 제한 ○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제4조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 회사와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부정당업체 제재(계약 제한)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회사는 제1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공급사에게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0 년 월 일

“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벚꽃길 71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계약담당 (인)

“공급사”

대표이사 (인)